

## 올 공공공사 물량 6천억 감소 건설업계 먹구름

아파트도 공급 과잉 우려에 착공 감소 예상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도내 건설업계 경기가 어둡다. 지난해 전체 건설업계의 기성실적은 물론 계약액도 늘어났지만 올해 공공공사 발주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다 대형공사도 대부분 마무리돼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회원사들의 건설수주액과 기성액은 전년에 비해 각각 31.8%, 16.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계약액도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대형공사와 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예정된 공공공사 발주 규모가 전년에 비해 6,000억 원기량 줄어든 3조4,24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며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 마무리 등으로 향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또 2014년 하반기부터 1년 반 이상 지속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파트 착공 증가도 최근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공사 발주 마무리와 시장 침체 우려에 따라 공공·민간 부문 공사 발주가 동시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물량 급감에 따른 피해 및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장



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화관에서 열리는 건설공제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

## 춘천시청 새청사 28일 공사 시작

**[춘천]**60년 만에 이뤄지는 춘천시청 청사 신축공사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총 800억원이 투입되는 새 청사는 현 청사 자리에 본청(지하 2층, 지상 8층)과 의회(지하 1층, 지상 3층)를 중심으로 배치된다. 근대문화유산인 구 춘천문화원 2층에는 춘천 역사관이 들어선다. 수요 예상 주차 대수 총 726대 대부분은 지하에 주차할 수 있도록

기공식 열고 5월까지 철거 마무리 2018년 준공

설계했다. 차량 진·출입로는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 사이길 방면(옥천길) 1곳, 구 춘천여고 오르막길(시청길) 방면에 2곳 등 총 3곳으로 분산했다. 춘천시는 오는 5월까지 철거한 뒤 6월부터 토목·지하골조(4개월), 지상골조(12개월), 광장 우선 개방 및 내부마감공사(4개월), 부대공사(2개월) 등의 공

정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한다. 201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기공식에서는 6·25전쟁 후 새마을운동에서부터 경춘복선전철 개통까지 이르는 지역 현대사를 영상으로 회고한다. 1957년 현 자리에 청사가 들어선 지 60년, 1896년 강원도 수부도시 120년을 맞는 해에 이뤄지는 대역사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이벤트도 펼

친다. 또 시청 건물에 낙서하기, 잉크탄 쏘기, 시장실에서 ‘나도 시장님’이라는 즉석사진 코너도 마련된다. 종각 옆에서는 식목주간 행사를 겸해 나무 5,000그루를 나눠준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문순 지사와 김진태 국회의원, 도·시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각계 대표, 전직 시장, 학계, 금융 대표 등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무현기자

강원건설 불황의 늪

# 등록업체 10% 작년실적 '0'

614곳 중 64곳 전무  
업체수도 매년 감소  
지역우대 정책 시급

강원도내 건설업체 중 10%가 지난해 단 한 건도 공사 수주를 못 하는 등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21일 도 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도내 건설업체 수는 614곳으로 2015년 600곳보다 14곳 늘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06년 1069곳과 비교하면 455곳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단 한건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64곳으로 전체 등록 업체 중 10%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공사 수주 실적도 감소세다.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수주는 2152건에 1조2984억원으로 2010년 1조5459억원과 비교하면 2475억 원이 줄었다.

실제 춘천의 A건설업체의 경우 2014년 12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지난해는 50% 수준인 60억 원에 불과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관련 공사가 대부분 발주·완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총 3637개 사업에 3조4143억원 규모다.

하지만 예년의 수주 실적으로 보면 도내 업체들은 총 사업 규모에 30~35%정도만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외지 중·대형업체들이 주 시행사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공공기관들이 분할 발주와 지역 제한 등 도내 업체들을 위한 우대 정책을 확대·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건설업체들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업체 우대정책을 제도권 안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춘천시 신청사 기공식

28일 현청사서 개최

춘천시 신청사 기공식이 오는 28일 오후 2시 현 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공식은 ‘새로운 출발, 도약하는 춘천’을 주제로 열리며 각급 기관장과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공식은 구청사 변천과정과 신청사를 소개하는 춘천시청의 현재와 미래 영상을 소개, 기념사, 회고사, 축사, 경축공연, 국기·시기 강하식, 시청 현판 탈착 순으로 진행된다.

기공식이 끝난 뒤에는 식목일을 맞아 묘목 5000주를 배포하는 ‘행복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이어진다. 춘천/김정호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22일 오전10시30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건설공제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 건설공사 소음·진동 이행보증금제 도입 추진 '논란'

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증 외에 소음·진동처럼 환경 분쟁에 관한 이행보증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환경부는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관리 차원에서 이행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에 다음달着手한다고 밝혔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자체 민원은 2014년에만 8만9000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5만5000건으로 전체의 61.5%를 차지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처리된 환경분쟁 신청사건을 봐도 총 3495건 중 85%인 2983건이 소음·진동 사건이다. 이들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분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소

환경부 "민원 급증 대응"  
다음달 정책연구 착수  
公共公사 우선 적용 전망  
건설사 "부담 증가 불가피"

음·진동 민원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음·진동 이행보증금 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제도의 윤곽이 잡히진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공사이행보증과 유사한 형태를 띠 것으로 보인다. 공사이행보증은 사업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실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통해 처리된 환경분쟁 신청사건



체나 공공기관 등에 이행보증금 운영기관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음·진동 이행보증금제 도입은 공공공사가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기준으로 연간 건설공사는 10만 건 내외이며, 이 중 공공공사 사업장이 2만 건 안팎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환경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대상을 가늠할 순 없지만 공공 건설현장의 절반만 적용해도 시공사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아하! 그렇구나

## 하수급인이 공급한 주기기의 하자로 공기가 지연된 경우 하수급인 책임의 범위

**Q** A회사는 세계적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제작·공급 업체입니다. B회사는 국내 플랜트 시공자이고, C회사는 국내 발주자입니다. A와 B가 체결한 플랜트 주기기 공급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고, 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을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플랜트 시운전 과정에서 스팀터빈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A는 자기의 제작상 과실을 인정하고 스팀터빈을 곧바로 수리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업운전 개시가 전체적으로 늦어졌고 그 결과 B는 C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공급한 기기의 하자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C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A가 B에게 그 금액을 다시 배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A는 시공자 B가 제3자인 발주자 C에게 납부한 지체상금은 결과손해일 뿐이므로 주기기 공급계약상 면책약정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에서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요?

**A** 국제건설계약 면책약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 개념은 한국 민법에서 말하는 '특별손해'와 의미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계약당사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또는 특별손해인지에 관하여 일률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통상손해로 본 예: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55312 판결 등, 특별손해로 본 예: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

다만 최근에 군사용 가방 제작업체 X가 가방 유통업체 Y에게 가방을 공급하였는데, 그 가방에 하자가 발견되어 그로 인해 최종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에 Y가 발주자 Z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Y가 Z에게 부담하게 된 지체상금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X는 Y가 위 물품을 Z에 납품하리라는 사정 및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2015.8.27. 대법원에 의해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다219122 판결).

위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터빈 제작·공급업체 A가 ①시공자 B가 A의 주기기를 이용하여 발주자 C를 위하여 플랜트를 시공할 것이라는 점 ②B가 완공예정일까지 플랜트 시공을 마치지 못하면 C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B가 C에게 납부한 지체상금은 (B가 입은) 통상손해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A는 위 지체상금 상당액이 '간접손해 또는 결과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자신이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하수급인이 공급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한 사안에서 위 지체상금 상당액이 시공자의 통상손해인지에 관해 아직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 유형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